

협회 소식

제7기 공정거래 전문연수과정 실시계획

- **실시목적** : 공정거래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 및 공정거래전문가 양성과 아울러 법 위반 행위의 사전예방 및 민간업계의 자율준수분위기 확산에 기여
- **일자** : 5월 17일(월)~5월 19일(수), 3일간(비)합숙식 전일교육
- **장소** : 연세빌딩 24층 국제회의실(중구 남대문로 5가 84-11)
- **연수대상** :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의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업무 담당 실무책임자 등 총 50명 내외
- **연수과정 구성 및 강의주제**
 - 연수과정 구성 : 공정거래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사례중심의 토의과정, 공정거래 관련 법체계 및 주요내용과 심결사례 해설 등
 - 강의주제 :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제력집중억제 등 11개 주제

『신규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교육』 실시



본 협회(회장 김 용, www.kfta.org)는 200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대우건설 등 5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(수) 연세빌딩 24층 국제회의실에서 『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 결 및 공시제도』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. 대우건설, 엘지전선, 세아, 삼양 등 신규로 지정된 기업집단 공시담당 실무자 70

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이날 교육에서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의 개요와 적용대상 회사, 적용대상 거래,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의 의무 등 제도의 주요내용 및 「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 규정」, 유권해석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·응답으로 진행되었다.

공정거래위원회 윤주선 사무관은 “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경과되었으며, 그 동안 기업의 내부거래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신고의무를 해태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가 많

았다”며 기업의 내부거래 공시담당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.

▶▶▶ 질의/응답

- 질의**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집단 계열사는 외부감사나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있고, 외부감사법에는 자산 70억원 미만인 경우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다.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가?
- 응답** 공정거래법에는 예외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. 공정거래법을 따라야 한다.
- 질의** 계열사가 신설 또는 제외된 경우 공시만 하면 되는 것인지, 아니면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?
- 응답**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의 신설 또는 제외사항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. 또한 신고만 하고 미공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.

제1기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실무수습 과정 실시

본 협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하는 제1기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실무수습 과정이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강당(사당동 소재)에서 실시중이다.

본 과정은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기본 자질을 함양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코자 실시되며, 합격자 총 62명 중 54명이 참가,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을 이용하여 매주 11시간씩 총 66시간 실시된다.

실무수습 프로그램은 창업컨설팅협회 이형석 회장, 광운대학교 임영균 교수, 창업전략 연구소 이경희 소장, 최영홍 변호사, 이철우 변호사, 성해용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 강사진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, 사업성 검토기법, 상권분석·입지전략, 가맹본부 및 가맹점 경영관리, 프랜차이즈 세무·금융·회계, 가맹사업의 법률관계,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작성 기법, 상담기법 등 23개 과목을 강의하며, 합격자들은 실무연수를 받은 후 가맹본부, 창업컨설팅회사, 개인 사무실 개소 등에 다양하게 진출하여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,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작성 및 수정,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·지도, 가맹사업에 관한 컨설팅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.

한편, 가맹사업거래상담사는 사업성 있는 가맹사업을 발굴하고, 가맹희망자에게 연결시켜주는 중간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시장의 공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제3회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포럼(CP Forum) 개최



본 협회(www.kfta.org, 김 용 회장)는 지난 4월 29일(목) 외교센타 12층 리더스클럽에서 『제3회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포럼』을 포스코, 대림산업, SK, KT 등 기업의 자율준수 관리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. 이날 포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이동규 독점 국장은 미국, 일본 등 외국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,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기업이 도입하고 있으며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.

한편, 미국은 공정거래 사건의 90%가 소송으로 가고 있으며,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, 앞으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 또한 기업의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업자가 직접 법원에 중지를 요청하는 사인금지청구제도를 중·장기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시사했다.

▶▶▶질의/응답

- 질의** 최근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부문에 외국인 투자를 최대 출자자인 경우로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, 이 경우 적대적 M&A 위협 등 어려움이 많다. 이에 대한 견해는?

- [응답]**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예외인정 범위에 관하여 관계부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,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.
- [질의]** 기업은 사건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, 법원 제소 등 여러 절차과정에서 인력 및 비용 등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. 경미한 사건의 경우, 합의방식(미국의 동의명령 제도를 의미)을 도입하여 행정력과 비용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방안이 있는지?
- [응답]** 외국의 경쟁당국은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합의과정을 도출하여 입증책임을 경감하고, 기업은 인력 및 비용 등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. 우리나라의 경우, 시정권고제도의 활용이 미흡했다.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.
- [질의]** 기업의 투명성 차원에서 내부거래위원회를 도입하였는데,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금액 등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?
- [응답]**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 범위 등을 위하여 업계의 특성을 감안한 표본추출을 실시중에 있다. 합리적인 표본이 추출되면 기업에 공표하겠다.

▣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포럼(CP Forum) 참석기업

삼성전자, 삼성카드, 삼성화재, 삼성SDS, SK, SK가스, 현대모비스, 기아자동차, 오토에버 시스템즈, 현대하이스코, 현대백화점, 현대해상화재보험, KT, 롯데쇼핑, 포스코, 창원특수강, 한화석유화학, 대림산업, 대림I&S, 신세계건설, CJ홈쇼핑, KT&G, 웅진, 농협유통, 서울보증보험, 엘엑스케이, 뉴웨이스인터내셔널코리아, 앤알커뮤니케이션, 하버세이, 한국룡제비티, 한국사미트인터내셔널, 포라이프리서치코리아

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27차 조정회의 개최

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, 수리 및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협회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김 용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4월 19일 하도급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. 조정회의에 상정된 주요 분쟁 사안과 그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.

▣ 조정불개시(반려)

▶ 또와또 등 3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

-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중소 기업자, 하도급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서 규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미만인 중소기업자로 하도급법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조정을 불개시 하고 신고서를 반려함.

▣ 조정종료(취하)

▶ 정광기술(주) 등 11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

-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재로 양당사자간 합의후 신고인의 신고취하로 조정절차를 종료함.

▣ 조정불성립

▶ 삼호조선(주) 등 4개 업체에 대한 분쟁건

- 양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정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이 재청구, 피신고인의 조사불응, 양당사자의 의견상이, 신고인이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 등의 사유로 조정이 불성립 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 사건이첩

▣ 당사자 출석 조정

▶ (주)아이트론씨스템즈 1개 업체에 대한 분쟁건

▣ 사건처리현황(2004. 1. 1~4. 30)

| 구 분 | 계 | 조정불성립 | 신고취하 | 불개시 |
|-----|----|-------|------|-----|
| 제 조 | 13 | 1 | 10 | 2 |
| 건 설 | 11 | 5 | 5 | 1 |
| 계 | 24 | 6 | 15 | 3 |